



자선 기부

- A. [개요](#)
- B. [적용범위](#)
- C. [정의](#)
- D. [규정](#)
- E. [책임](#)

[부록 1 - 정의](#)

[부록 2 - 절차](#)

[부록 2A - 기부 요건](#)

[부록 2B - 기부 승인](#)

[부록 2C - 신청 양식](#)

[부록 2D - 기부 협약](#)

[부록 2E - 기부 확인서](#)

A. 개요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은 명망 있는 자선 단체에 자금, 재산, 제품 및 서비스를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는 승인된 핵심 영역에서 자선 목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자선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부, 또는 은밀하게 공여 또는 지급하거나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공여 또는 지급한 기부는 일체 금한다. 이러한 기부는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며, 회사의 자원을 남용하고, UTC 회사에게 부패방지, 정부 계약 및 기타 관련법상의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B. 적용범위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및 동사의 전세계 부서, 자회사, 본부, 기타 동사의 지배를 받는 기업체 및 사업체(이하 “**운영 단위**”라 한다), 그리고 동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이하 “**UTC**”로 통칭한다). **정치 후원금, 자선 기부, 및 여행경비 지원**은 각각 [CPM 5: 대정부 관계](#), [CPM 48A: 사업상 답례품의 제공](#), 및 [CPM 48B: 제 3 자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의한다.

C. 정의

“**본사(Corporate)**”는 UTC 본사를 의미하며, “**사업 단위 (Business Unit)**” 또는 “**BU**”는 Otis Elevator Company, Pratt & Whitney, UTC Aerospace Systems, UTC Climate, Controls & Security 및 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를 의미한다. “**CPM**”은 규정 및 표준 업무 지침(Corporate Policy Manual)를 의미한다.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 다른 용어들은 [부록 1](#)에서 정의한다.

D. 규정

UTC 는 자격있는 단체에 자선 기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UTC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에 의한 기부예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산 지출에 의하지 않은 요청, **UTC 핵심 영역에** 속하지 않은 기부(예산지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 불문) 및 직원 업무 비용 상환 제도를 통한 상환 등은 삼가한다. **부정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금품**이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기부를 공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자선 기부**는 [부록 2](#)에 따라 승인을 거쳐야 한다.

E. 책임

1. **공적 사안 검토 위원회 UTC** 이사회 산하 공적 사안 검토 위원회(이하 “**이사회 산하 위원회**”라 한다)는 UTC 의 **자선 기부** 감독을 담당한다.
2. **UTC 자선 기부 자문 협의회**. UTC 자선 기부 자문 협의회(이하 “**UTC 자문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UTC 고위 중역(또는 이들이 지정한 자)로 구성된다: 재무담당 부사장, 글로벌 대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 인사담당 부사장, 과학기술담당 전무이사, 커뮤니케이션담당 전무이사(이하 “커뮤니케이션담당 CVP”라 한다)(의장), 글로벌 윤리 및 준수 담당 상무이사(이하 “CVP GEC”라 한다). **UTC 자문 협의회**는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는 **자선 기부** 제안에 대한 검토 및 **UTC 사장 겸 CEO**에 대한 추천, **UTC 자선 기부 예산** 검토 및 승인, 그리고 [부록 2](#)에 따른 본 규정의 전사적 시행 및 관련 행정처리 등을 담당한다.
3. **사업 단위 자선 기부 위원회**. 각 **BU**의 최고경영자는 **BU** 자선 기부 위원회(이하 “**BU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BU** 위원회는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최고임원(위원장) 및 통제 및 준수 부서의 **BU** 대표들로 구성한다. **BU 위원회**는 (**BU**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BU 후원 예산**의 검토 및 승인, 그리고 [부록 2](#)에 따른 본 규정의 시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담당한다
4. **커뮤니케이션담당 SVP**는, CVP GEC와 협의하여, 본 규정의 해석 및 격년 마다의 검토를 담당한다.¹
5. **UTC** 규제담당 상무이사는 해당 공통 규제망에 대한 통제 및 시험 절차를 적용하고, **UTC** 내부감사담당 상무이사는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법규준수 감사(CPM 34: 글로벌 준법 윤리 프로그램** 참고)를 포함한다). 각 감사는 **운영 단위** 수준에서의 법규준수를 평가한다. UTC의 독립 감사는 연례 재무 감사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 및 거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¹ 커뮤니케이션담당 SVP 및 CVP GEC는 부록 1 및 2를 필요에 따라 본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할 권한이 있다.

부록 1: 정의

계열사는 다음의 **단체** 중 하나를 의미한다.

- 언급된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
- 언급된 **단체**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
- 언급된 단체와 함께 또 다른 단체에 의한 공통의 지배를 받는 단체

장부 및 기록은 **CPM 48: 부패방지**에서 정의한다.

사업상 답례품은 **CPM 48A: 사업상 답례품의 제공**에서 정의한다.

지배권은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직간접적 권한을 의미한다.

- 어느 단체의 운영 조직의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의결권에 해당하는, 해당 단체의 주식 중 50%를 초과한 수의 표를 행사할 권한
- 어느 단체의 일상적인 사업상 결정 및 방침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다만, 그 수단은 의결권의 확보, 계약 등을 불문한다.

장부 및 기록은 **CPM 48: 부패방지**에서 정의한다.

고객은 UTC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및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제 3자**를 의미한다.

지정 수령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령 단체**를 의미한다.

- **정부**
- **정부 공무원** 또는 **정부 공무원의 관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위 관리직을 점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해당 단체의 마케팅, 지원금 유치, 관리 또는 기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 미국의 「국내 세입법」 제 501 조제(c)항제(3)호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률 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단체
- **VP GEC**가 지정한 단체

유통업체는 **CPM 48E: 유통업체 및 외부 판매 대리인**에서 정의한다.

자격있는 수령 단체란 “비영리” 단체(즉, 미국 「국내 세입법」 제 501 조제(c)항제(3)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로서 그 주된 임무 및 운영의 초점이 **UTC 핵심 영역**에 속하는 **자선기부** 프로그램의 관리를 내용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진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실적을 지닌 단체를 말한다.

단체는 영리 여부를 불문한 모든 기업,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개인 사업자, 신탁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의미한다.

예외적 자선 기부는 UTC 직원에 의한 자원봉사 서비스 또는 UTC가 특별 소외계층(예: 학생, 노인, 장애인 또는 환자 등)에 직접 제공하는 최소한의 금액의 현물 기부(예: 가방, 책, 일반 의약품, 소책자, 돋보기, 학용품, 교과서 등)의 형태를 띠는 **자선 기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미국 또는 기타 국가, 지역, 주(州), 또는 지방·시 단위 정부
- **정부 항공 당국 (GAA)**
-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공사
- 정부를 대리하여 공무를 행하는 **단체**
-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 회사 또는 사업
- 정당
- 공공 국제 조직 (예: 국제연합,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 그 부서, 기관, 산하조직 또는 대행기관

정부 항공 당국은 [CPM 48B: 제 3 자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서 정의한다.

정부 공무원은 특정 정부의 장, 임원 또는 직원(선출직 또는 임명직 여부는 불문한다), 또는 상기 직책에 대한 후보를 의미한다.

로비스트는 [CPM 48D: 로비스트](#)에서 정의한다.

외부 판매 대리인 또는 NSR 은 [CPM 48E: 유통업체 및 외부 판매 대리인](#)에서 정의한다.

자선 기부는 자선 목적으로 UTC 명의로 또는 UTC 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금전, 재산, 제품 및 서비스의 기부를 의미한다.

자선 목적은, 「국내 세입법」 제 501 조제(c)항제(3)호 또는 [기업 자선 권장 위원회\(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신, 도덕, 물질 등의 면에서) 인류 전반을 이롭게 하고, 인류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인류를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일로서, 그에 상응하는 온전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수령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정치 후원금은 [CPM 5: 대정부 관계](#)에서 정의한다.

기부 금지 대상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예외적 현물 자선 기부 대상을 제외한 모든 개인 (고객 대표 또는 정부 공무원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영리” 단체
- 일차적으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의 50%를 초과) 단체(다만, UTC 핵심 영역을 지원하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교육단체에 대한 자선 기부는 예외로 한다)
- 정당 또는 후보자 또는 정치적 주장의 지지를 주로 행하는 그 밖의 단체
- 종교 단체(UTC 핵심 영역을 하나 이상 지지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자선 기부로서, 해당 단체가 그 기부금 등을 그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부가 발표한 감시 대상자 목록상의 기부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단체(그 해당 단체 또는 계열사), 또는 운영 단위의 거래금지 공급업체 목록에 등재된 단체, 또는 그러한 공급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일 단체인 단체

수령 단체는 자선 기부를 수령하거나 공여 받은 제 3 자를 의미한다.

거래금지 공급업체 목록이란 운영 단위가 정한 사유로 거래가 거절되거나 해지된 모든 공급업체에 대하여 운영 단위가 유지하는 목록을 의미한다.

관계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 개인의 경우, 해당 개인의 직계 또는 확대 친족으로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계열사.

여행경비 지원은 [CPM 48B: 제 3 자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서 정의한다.

제 3 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개인의 경우, UTC 또는 UTC 계열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
- 단체의 경우, UTC 또는 UTC 계열사가 아닌 단체(본 규정과 관련하여, UTC 합작투자회사의 파트너 및 공급업체, 그리고 그 각각의 계열사는 제 3 자에 해당한다)

가치는 특정 자선 기부금의 실제 또는 추정 공정 시장 가격을 의미한다.

공급업체는 현재 UTC 의 하청업체 또는 UTC 에 자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거나, 향후 그러한 업체가 될 수 있는 제 3 자를 의미한다.

부록 2: 절차

A. 연간 기부 예산

매년 11 월, **BU 위원회**는 다음 역년에 예정된 모든 **자선 기부**에 대한 예산서(이하 “**BU 기부 예산서**”라 한다)를 **BU 최고경영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된 **BU 기부 예산서**는 **커뮤니케이션 담당 SVP**에 제출한다. **커뮤니케이션 담당 SVP**는 12 월에 **UTC 자문 협의회** 및 **UTC 자문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종합 예산서(이하 “**UTC 기부 예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UTC 기부 예산서**는 승인을 거친 **BU 기부 예산서**와, 다음 역년에 대한 **본사의 자선 기부**(“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 및 “**PAC 매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예산서(이하 “**본사 기부 예산서**”라 한다)로 이루어진다. **UTC 기부 예산서**는 각 **자선 기부**에 대하여, 예산을 요청한 **운영 단위**(**본사** 또는 **BU**), 요청의 출처(예: **UTC, 수령 단체, 고객, 정부, 미국 연방 정부** 등), **자선 기부 유형**(즉 금전, 또는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물 기부), 가치, **수령 단체(지정 수령 단체 여부 포함)**, 자선 목적, **UTC 핵심 영역** 및 금년도에 해당 수령 단체에게 제출한 금액(데이터를 확보가능한 선에서 파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B. 수령 단체 심사(실사)

- 운영 단위**는 모든 **수령 단체**를 심사하여 **수령 단체** 또는 **계열사**로 알려진 대리인이 **정부가 발행한 감시 목록상**의 금지 또는 제한 당사자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오로지 **예외적 자선 기부**를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 단위 변호사** 또는 그 지정 담당관은 모든 **지정 수령 단체**에 대하여 그 요건 (예: **자격있는 단체**로서의 지위) 및 자격(예: **자선 기부 실적**) 및 진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위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해당 단체의 설립지 또는 자금이 지출될 장소에 해당하는 관할권 내에서의 부정 행위에 대한 내재적 위험과 관련 실사 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가장 최근 발표된 투명성 내부 부패 인식 지표(Transparency Inter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50 이하인 경우, 예산을 요청하는 **운영 단위**는 **TRACE 인증 보고서**(또는 **VP GEC** 및 그 지정 담당관이 승인한 독립 조사 업체가 제출한 그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입수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요건 검증(**단체**에 대한 기초 정보, 소유권, 핵심 인사, 권한·현황 “비영리성”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 **계열사**), (b) 데이터베이스·미디어 검색(정부가 발표한 감시 목록 포함), (c) 지인, 비정부 조직, 규제 담당관, 기타 독립성을 갖춘 정보원, 및 **지정 수령 단체**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한 실적과 진정성 평가

C. 요건 및 승인

자선 기부에 대한 모든 요청(예산지출에 의한 기부 여부를 불문한다)은 **부록 2A**에 따라야 하며, **부록 2B**에 따른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객, 정부, 미국 연방 정부**가 요청하였거나, **지정 수령 단체**가 관련되어 있거나, **UTC 자문 협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모든 **자선 기부**에 대하여, **부록 2C**에 정한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D. 협약

- 예외적 자선 기부**를 제외하고, 절차에 따라 승인된 **지정 수령 단체** 대상 **자선 기부**는 (형태 또는 가치를 불문하고) **부록 2D**에 따라 집행된 서면 협약(이하 “**기부 협약**”이라 한다)에 근거한다.
- 예외적 자선 기부**를 제외하고, (**운영 단위**의 상업 계약의 적용을 받는) **UTC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부, 그리고 직원 업무 비용 상환액을 이용한 제한된 범위의 기부(**부록 2A** 제 C 조 참조), 그 밖에 절차에 따라 승인된 **자선 기부**는 **기부 협약**(가치 > 미화 50,000 달러) 또는 **부록 2E**에 따른 **확인서**(이하 “**기부 확인서**”라 한다)(미화 1,000 달러 < 가치 ≤ 미화 50,000 달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E. 금전 상황

1. 승인된 **자선 기부**를 위한 자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승인(예산 또는 비예산 여부 불문),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이 중 해당 사항 있는 것)에 따른 것, (2) **운영 단위** 본부의 재무 조직이 (전산 송금으로) 직접 (제 3 자를 통하지 않음) 그 설립지에 해당하는 관할권(또는 BU 법률자문 및 그 지정 담당관에 승인한 기타 관할권(BU 기부) 또는 CVP GEC 또는 그 지정 담당관이 승인한 기타 관할권(본사 기부)) 내의 **수령 단체**에 지급할 것, (3) 지출 후, 해당사항을 즉시 정확하게 해당 **운영 단위**의 **장부 및 기록**에 기록할 것
2. 본 규정에 의한 승인을 득하고 **수령 단체**가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를 완전히 체결 또는 확인할 때 까지는 어떤 **자선 기부**도 금지된다.

F. 대장

본사 및 각 **BU**는 승인된 각 **자선 기부**에 대하여 위 제 A 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는 종합 대장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후원 **자선 기부**가 예산 지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그 금전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G. 정지 및 해지

승인된 **자선 기부**에 대한 제안 과정 또는 집행 과정 중 언제라도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중역 또는 **커뮤니케이션담당 SVP**가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특정 **수령 단체**가 실사에 온전히 협력할 의도나 능력이 없거나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이 중 해당사항 있는 것), **UTC** 규정 또는 관련법을 온전히 준수할 의도나 능력이 없을 시, 또는 그 밖에 후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거나, 또는 그 밖에 **UTC**의 **자선 기부** 프로그램의 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역 또는 VP는 서면으로 **BU** 법률자문 또는 그 지정 담당관, 또는 **CVP GEC** 또는 그 지정 담당관(본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그 승인을 요하는 **자선 기부**의 경우)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는 **BU** 법률자문 등은 적절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 **지정 수령 단체** 또는 **UTC 자문 협의회**가 이전에 승인한 **수령 단체**가 정해진 사유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담당 SVP**는 **CVP GEC** 및 **UTC 자문 위원회**에 각각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H.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담당 SVP**는 **UTC 자문 협의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해당 역년의 현재 일자까지 제공한 **자선 기부** 내역을 제출한다. 그러한 내역은 각 **자선 기부**에 대하여 위 제 A 조에 정한 사항, **기업 자선 권장 위원회**가 정하는 지정 범주, 지리적 지역(즉: 미국,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유럽-아프리카-중동 및 남아메리카)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자선 기부**가 예산 지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그 금전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² 협력 미제공 및 미준수 사안의 경우 사안별로 평가하여야 하나, 승인을 거친 **자선 기부** 또는 **수령 단체**에 대한 정지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 본 규정 또는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이 중 해당사항 있는 것)에서 정한 문서 작성을 실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b) 허위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 면담 요청이나 TRACE 또는 기타 독립 조사 업체에 협조하는 등 실사 관련 활동에 협력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d) **운영 단위**의 **거제금지 공급업체 목록**에 등재되거나, 그에 해당하는 **공급업체**와 실질적으로 동일 회사인 경우, 또는 **정부 발행 감시 목록상**의 거부 또는 제한 당사자인 경우, (e) **UTC**의 직원과의 해결 불가능한 이익충돌 또는 기타 경쟁업체, 고객, 정부, 정부 공무원 또는 **UTC**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가 관련된 거래 또는 **UTC**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입법, 규제 또는 그 밖의 행위 또는 관용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자 위치에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와의 부적절하거나, 금지되거나, 해명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 경우, (f) 고객,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이 **UTC**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또는 정부의 입법, 규제 또는 그 밖의 행위 또는 관용에 대한 조건으로 **자선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 (g) 부정 행위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경우, (h) 형사사건에서의 유죄판결, 파산, 부도의 경우, (i) 부정직, 불공정 또는 비윤리적 거래 등에 대한 평판이 있는 경우, (j) **수령 단체**의 설립지에 해당하는 관할권 및/또는 자금을 지급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관할권에서 외교상 기피인물이 되는 경우, (k)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이 중 해당사항 있는 것)를 충실하게 작성 또는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l) 합리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및 감사 활동을 허용하지 않거나, 요구한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m) **기부 협약** 또는 **기부 확인서**(이 중 해당사항 있는 것)를 위반한 경우

부록 2A - 기부 요건

A. 일반 요건

자선 기부(“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 및 “PAC 매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모든 요청 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판단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수령 단체**는 **자격있는 단체**이며 **기부 금지 대상자**가 아님, (2) 해당 **자선 기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함: (a) 실질적인 **자선 목적**에 의한 기부, (b) 하나 이상의 **UTC 핵심 영역**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UTC 핵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득력 있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c) 아래 제 C 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3) **UTC**는 미국 「국내 세입법」에 따른 기여금을 공제할 권한이 있음. **UTC** 직원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이익충돌을 유발하거나(**CPM 7: 이익 충돌** 참조), **부정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거나,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거나 **UTC**의 평판을 저해하는 어떠한 기부도 공여 또는 제공할 수 없다.

B. UTC 핵심 영역

UTC 핵심 영역에 속하지 않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자선 기부**(“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 및 “PAC 매치”를 포함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이하 “**UTC 핵심 영역**”이라 한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STEM) 교육**: **UTC**는 후속 엔지니어, 연구자 및 과학자 양성을 담당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한다. **본사**는 자체 STEM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차원의 활동을 조율하고, 각 **BU**는 해당 프로그램에 가급적 참여한다. 위에 언급한 자체 프로그램 외에, **UTC**는 공학 및 자연과학에 대한 진로, **UTC**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 공학 및 과학계 내에서 소수자 집단과 여성의 수 확대 등을 위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속가능 도시 건설**: **UTC**는 도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건설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한다. **본사**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들과 함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세계적 차원의 활동을 조율한다. 위에 언급한 자체 프로그램 외에, **UTC**는 에너지 효율성, 환경 지속가능성, 물자원 보전을 지원 및/또는 증진하고, 화재, 범죄 및 자연재해 위험을 경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자선 기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활력있는 지역사회**: **UTC**는 **UTC**가 영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의 안녕을 증진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한다. 그러한 단체는 문화 단체, 보건 및 봉사 자선단체, 지역 내 모금 활동 및 지역사회기반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참전용사 지원 사업**: **UTC**는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보훈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를 통하여 군인 및 그 가족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ii) 자유 수호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참전용사들의 용기, 희생 및 정신을 기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재난 구호**: **UTC**는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UTC**는 지역 당국 및 지역 구호 기관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재난에 대한 구호나 기초 생활 요건 및/또는 재건 활동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재난 구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예: 적십자/적신월사 협회)를 후원한다.
- **사업 윤리 및 준수**: **UTC**는 투명성 및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포함한 사업 윤리 및 준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한다.
- **다양성 및 소수자 참여**: **UTC**는 사업 및 공무에 있어 다양성과 소수자 참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있는 수령 단체**를 지원한다.

C. 기타 제한

위 제 A 및 B 조에 정한 요건 외에, **자선 기부**에 대하여 다음 제한을 적용한다.

- **투자 캠페인:** UTC는 **UTC 핵심 영역**에 대한 **자격있는 수령 단체**의 투자 유치 캠페인을 후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 기금에 대한 기부 출자의 경우 UTC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업계에서 모금할 총액의 20%를 초과하거나 전체 모금액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UTC는 투자 유치 캠페인에 미화 3,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없다.
- **모금 캠페인:** 설득력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UTC는 모금 캠페인을 후원하지 않는다.
- **논란이 될 수 있는 명분:** UTC는 심한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의 또는 그 밖의 논쟁적인 명분을 위한 기부를 피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다만 본 규정의 주된 목적인 **UTC 핵심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자선 목적**의 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중 기부:** **본사** 및 각 **BU**는 동일한 행사, 목적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당액의 기부를 수 차례 제공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한다. 다만, **커뮤니케이션담당 SVP** 또는 그 지정 담당관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에 해당하는 기부의 경우, 그에 대한 승인의 범위 내에서, UTC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최대한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조율하여야 한다.
- **직원 업무 비용 상환을 통한 기부:** **자격있는 수령 단체**가 후원하는 지역 내 자선 행사에 직원이 참가하는 데 대하여 (예를 들면, 자선 골프대회 등) 적정 액수의 참가비를 걷는 경우를 제외하고, UTC는 직원 업무 비용 상환금에서 **자선 기부** 금액을 모금하는 행위를 가급적 삼가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은 업무 비용 상환금에서 **지정 수령 단체에 자선 기부**를 제공하거나 (금액 불문), **자격있는 수령 단체**에 미화 250 달러를 초과하는 **자선 기부**를 제공할 수 없다. 직원은 해당 지역사회 연락 담당 또는 그 지정 담당관에게, 본 규정에서 허용하는 직원 비용 상환금을 통한 자선 기부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D. 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

UTC는 UTC 이사, 임원 및 직원, 그리고 UTC의 미국내 **계열사**가 **자격있는 수령 단체**에 지급하는 특정한 현금 또는 주식 기부금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 프로그램은 언제나 UTC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E. PAC 매치

UTC는 UTC 정치 활동 위원회를 후원하는 자격있는 직원이 지정한 **자격있는 수령 단체**에게 금전을 기부할 수 있다. PAC 매치 프로그램은 언제나 UTC의 재량에 의하여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부록 2B: 필요 승인.
표 1: 예산지출에 의한 기부³

BU 기부 예산	본사 기부 예산
BU 위원회 BU 최고경영자 UTC 자문 협의회·지정 담당관	UTC 자문 협의회·지정 담당관

표 2: 예산지출에 의하지 않은 기부³

가치·유형	BU 측 요청	본사측 요청
미화 50,000 달러 이하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중역·지정 담당관 BU 법률자문·지정 담당관(고객 요청의 경우*) BU 최고경영자·지정 담당관	SVP 커뮤니케이션담당 VP·지정 담당관 CVP GEC·지정 담당관(고객 요청의 경우*)
미화 50,000 달러 미만 또는 미화 500,000 달러 이상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중역 BU 법률자문·지정 담당관(고객 요청의 경우*) BU 최고경영자·지정 담당관 커뮤니케이션담당 SVP	커뮤니케이션담당 SVP CVP GEC·지정 담당관(고객 요청의 경우*)

*고객 요청의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선 기부를 의미한다: (1) 고객 또는 그 계열사·관계인이 제공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공한 기부, (2) 고객을 대리하여 유통업체 또는 외부 판매 대리인이 제공한 자선 기부, (3) 기존 또는 향후 고객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자선 기부 또는 UTC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거래와 관련된 자선 기부

표 3: 추가 필요 승인.

아래에 해당하는 요청의 경우, 표 1 또는 2 에 따른 모든 필요 승인, **부록 2C**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 및 정부 공무원과의 사업 관계는 다양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 법률 및 규정은 많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요청하거나, 그를 위하여 요청한 자선 기부를 엄격히 금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담당 중역은 ECO 또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부측 요청 대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 상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미국 연방정부측 요청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치·유형	BU 측 요청	본사측 요청
미화 500,000 달러 미만(종류 불문)	BU 최고경영자 UTC 자문 협의회·지정 담당관 UTC 사장 겸 CEO	UTC 자문 협의회·지정 담당관 UTC 사장 겸 CEO
모든 가치·지정 수령 단체 또는 정부 측 요청 ** 또는 미국 연방 정부측 요청***	BU 법률자문 CVP GEC	CVP GEC

**정부측 요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선 기부 요청을 의미한다: (1) 미국 주(州)·지방 정부 또는 미국 외 정부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미국 외 정부정부 공무원, 또는 그 계열사·관계인 명의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요청, (2) 미국 주(州)·지방 정부 또는 미국 외 정부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미국 외 정부 공무원을 대리하여 유통업체, 로비스트 또는 외부 판매 대리인이 하는 요청, (3) 미국 주(州)·지방 정부 또는 미국 외 정부 또는 미국 주(州)·지방 정부 공무원 또는 미국 외 정부정부 공무원과의 기존 또는 향후 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부 거래와 관련된 요청. 여기서 정부 거래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 대상에 대한 UTC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 (i) 미국 주(州)·지방 또는 미국 외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 (ii) 미국 주(州)·지방 또는 미국 외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 회사, 사업, 기관 또는 대형 기관(미국 주(州)·지방 또는 미국 외 정부가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BU 법률자문 또는 그 지정 담당관(BU 측 요청의 경우) 또는 VP GEC(본사측 요청의 경우)는 해당 거래가 정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b) 미국 주(州)·지방 또는 미국의 정부의 입법, 규제 또는 그 밖의 행위 또는 관용으로서 UTC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관용.

³ 특정 기부(예산 또는 비예산 불문) 요청시 추가 필수 승인에 관한 표 3 관련 문의: 면제대상 자선 기부는 표 3의 요건에서 배제되어 있다. 비예산의 경우, 해당 면제대상 자선 기부는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최고임원·지정 담당관(BU 요청의 경우) 또는 VP 커뮤니케이션담당 최고위원·지정 담당관(회사 요청의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측 요청 및 미국 미국 연방 정부 거래는 미국 연방 정부 또는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이 관련된 정부측 요청 또는 정부 거래를 각각 의미한다.**

부록 2C: 신청서

일자: []

수신: [필요 승인에 대한 승인권자는 [부록 2B](#) 참조]

발신: [BU 커뮤니케이션담당 중역 (BU측 요청)·커뮤니케이션담당 SVP (본사측 요청)]

제목: 자선 기부 제안에 대한 승인 요청건

1. 개요

[BU·본사]는 [자선 목적·UTC 핵심 영역을 간단히 기재]를 위한 [수령 단체 정식 명칭](이하 “수령 단체”라 한다)에 대한[미화 달러로 표시한 가치]의 기부에 대한 승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CPM 11: 자선 기부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사유 기재(예: 미화 500,000 달러 초과, 지정 수령 단체, 고객측 요청, 정부측 요청 또는 미국 연방정부측 요청)]

2. 수령 단체 및 실사

[수령 단체]를 기재하고, 해당 단체가 **자격있는 수령 단체**의 정의를 어떠한 면에서 충족하는지 명시한 다음,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해당 단체가 **지정 수령 단체**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재. 실시한 모든 실사 내역을 기재하고 실사 보고서 첨부]

3. 기부 내용

[유형 (즉, 현금 또는 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물 기부), 가치, 자선 목적, UTC 핵심 영역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데 대한 사유), 예산지출에 의한 기부 여부, 수령 단체가 자선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및 자금 지출 구조·위치 기재]

4. 요청 주체·관련 문제

[해당 기부를 요청한 주체 기재(예: UTC, 고객, 정부 또는 미국 연방정부), 그 밖에 해당 요청에 관여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는 운영 단위, 및 기타 실재적·잠재적 이익충돌 또는 기타 윤리 또는 준수 관련 문제 기재]

5. 회사 사업·업무에 미치는 영향

[기존 또는 향후의 모든 고객 또는 정부 관계, UTC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위한 거래, 입법, 규제 또는 그 밖의 정부 행위 또는 관용으로서, 본 요청의 승인·기각에 유·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UTC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관용]

6. 협약

[해당 기부 협약이 기부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록 2](#)) 확인 및 기부 협약의 정의에서 중대하게 벗어나는 부분 또는 특이 조항을 강조하여 기재]

7. 성과 모니터링

[BU·본사의 담당자에 의한 수령 단체의 기부 협약 준수 여부 모니터링 내역 기재]

8. 내부 승인

[현재까지 완료한 모든 BU·본사 내 승인 기재]

부록 2D - 기부 협약

	항목	표제	내용
1	민영 일반	자선활동 내역	수령 단체가 수행하거나 후원할 자선 활동 내역 기재.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감사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기재. 수령 단체 의 기부금 요청, RFP 또는 그와 유사한 신청 문서를 직접 첨부하거나 언급하는 방안 검토
2		지원금	지원 금액 및 협약상 지원 한도 기재
3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조건 기재 지급 방법(수령 단체의 설립지 또는 수령 단체가 후원 대상 자선 활동을 수행할 장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령 단체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대한 전산 송금을 권장함)
4	확약	사업 윤리 및 준수	<p>수령 단체는 다음 사항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자금은 오로지 기부 협약에 명시한 자선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관련법을 항시 준수한다. 여기에서 관련법은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이익충돌 및 부패를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부정한 금품을 (직간접적) 절대 공여, 약속, 지급 시도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장부 및 기록에 UTC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 및 UTC가 후원하는 자선 활동의 수행/지원에 관련된 비용을 즉시 정확하게 기재한다.
5		일반 협력	수령 단체 는 UTC의 자금 지급, 후원 대상 자선 활동의 수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기부 협약 의 이행을 위한 문서를 작성 및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6	인정 및 보증		<p>수령 단체는 기부 일자 및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공개 목록에서 명시한 경우 또는 UTC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확인, 인정 및 보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UTC 직원, 고객,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도 수령 단체에 대한 소유권,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UTC에 대한 수령 단체의 관계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을 위치에 배치하지 않는다. 수령 단체는 자선 활동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허 및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기부 협약은 판매 지역의 관련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는다. 수령 단체는 기부 협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지원 자금을 오로지 기부 협약에 명시한 자선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수령 단체는 부정한 금품을 공여하거나, 약속하거나,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시도하지 않았다. 수령 단체는 상기 인정 및 보증 사항 중 더 이상 타당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UTC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동의한다.
7	기간		만료 기간 명시. 해당 기간 만료시,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협약은 자동 만료됨
8	해지·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임의 해지 가능 UTC에 의한 일방적 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 단체 또는 그 이사, 임원 또는 직원이 설립지 또는 후원 대상 자선 활동 수행 지역에서 외교상 기피인물이 되거나, 그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고발이 있는 경우 수령 단체가 기부 협약을 위반한 경우. 수령 단체가 UTC 감사에 협력하지 않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령 단체의 상기 인정 또는 보증 사항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수령 단체가 즉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당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UTC가 자신의 재량으로 수령 단체의 행위 또는 기부 협약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 단체의 부도, 파산 또는 재산관리 개시의 경우 ○ 수령 단체의 소유, 경영 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UTC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변경사항이 기부 협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변경사항이 수령 단체 또는 UTC 직원에 대한 이익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C는 수령 단체가 확약, 인정 또는 보증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협정을 해지할 경우 자금의 지급을 정지 및 중단할 수 있으며, 확약, 인정 또는 보증 사항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9	기타	지위·대리관계 부존재	수령 단체는 독립 계약자이다. 본 기부 협약에서는 갑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양도·하도급	수령 단체는 UT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기부 협약을 양도하거나 후원 대상 자선 활동에 대한 하도급을 줄 수 없다.
11		보도자료	수령 단체는 기부 협약 또는 후원 대상 자선 활동에 관련된 보도자료 또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UTC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UTC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부록 2E - 기부 확인서

본 지원금 신청서 (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하 “**UTC**”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금 또는 제품, 서비스 또는 기타 재산의 지원을 **UTC**로부터 수령함으로써, 귀하(이하 “**수령 단체**”라 한다)는

-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조건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부 협약**에 명시한 자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 UTC가 기부한 자금 및 품목은 오로지 **기부 협약**에 명시한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 관련법을 항시 준수한다. 여기에서 관련법은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이익충돌 및 부패를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 부정한 금품의 (직간접적) 공여, 약속, 지급 시도 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 다음의 경우 UTC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친다: (1) 지원금 신청서에 명시한 자선 활동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경우; (2)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된 보도자료 또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UTC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 다음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어떠한 UTC 직원, UTC 고객, 정부 또는 정부 공무원도 수령 단체에 대한 소유권, 금전적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UTC에 대한 수령 단체의 관계 또는 UTC가 기부한 금전 또는 품목으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얻을 위치에 배치하지 않는다.
 - 수령 단체는 UTC가 지원금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오로지 지원금 신청서 명시한 자선 사업 수행 및 정당하고 적법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 수령 단체는 부정한 금품을 공여하거나, 약속하거나, 지급하거나, 그 지급을 시도하지 않았다.